

의안번호	2202247
의 퇴 인	안상훈 의원
회 답 일	2024. 8. 5.
추계번호	24C2308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수행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5억 7,800만원(연평균 3억 1,6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	60	—	—	—	—	60	12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안 제7조)	3.5	3.5	3.5	3.5	3.5	17.5	3.5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실시 (안 제8조)	300	300	300	300	300	1,500	300
추가재정소요 합계	364	304	304	304	304	1,578	316

주: 추가재정소요 합계는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표시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이 경우 지역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음	의무규정
3	안 제7조(사회서비스 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4	안 제8조(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계획 및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사회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9조(사회서비스의 개발·보급등)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개발·보급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서비스 개발·보급등 업무를 시·도 사회서비스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0조(사회서비스 기술 등의 연구·개발사업)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개발·보급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음 (제2항·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관련 분야의 기관·단체를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사회서비스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11조(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1.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2.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침해 예방 및 대응 3. 권익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그 밖에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업	재량규정
8	안 제12조(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음 (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 사회서비스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역량 강화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13조(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1. 사회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및 연구 2.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 예방 및 구제 3. 그 밖에 사회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재량규정
10	안 제14조(금융지원)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음 1.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과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지원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1	안 제15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기반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2	안 제16조(조세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 1.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조합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재량규정
13	안 제17조(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재량규정
14	안 제18조(품질인정)	(제1항·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품질의 우수성·안정성·신뢰성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품질인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고,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음 ※ (안 제26조) 품질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제6항) 보건복지부장관은 품질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5	안 제19조(인정서와 인정마크)	보건복지부장관은 품질인정을 받은 자에게 인정서를 교부하고 인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정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홍보하도록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6	안 제23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2	안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	○ 기존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 시행할 수 있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
3	안 제7조(사회서비스정책심의 위원회)	○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4	안 제8조(실태조사)	○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5	안 제9조(사회서비스의 개발· 보급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6	안 제10조(사회서비스 기술 등의 연구·개발사업)	×	
7	안 제11조(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보호)	×	
8	안 제12조(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	×	
9	안 제13조(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	×	
10	안 제14조(금융지원)	×	
11	안 제15조(재정지원)	×	
12	안 제16조(조세의 감면)	×	
13	안 제17조(평가)	×	○ 현행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시행 및 사후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
14	안 제18조(품질인정)	×	
15	안 제19조(인정서와 인정마크)	×	
16	안 제23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시책을 추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하에서 제시하는 일부

조문은 정부가 추진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선언적·권고적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본 추계서의 추계 대상에서 제외

- (안 제9조) 현 시점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시범사업의 종류와 내용, 관련 업무의 외부기관 위탁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안 제10조)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등이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안에 따라 추가로 수행하게 될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횟수 및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안 제11조) 현 시점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음
- (안 제12조) 현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실시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규모, 관련 사업의 외부 기관 위탁 여부 및 지원 예산 규모 등을 알 수 없음
- (안 제13조) 현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실시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음
- (안 제14조) 안 제14조제54항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성장을 위해 지원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안 제15조) 현 시점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지원할 재정의 규모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알 수 없음

- (안 제16조) 현 시점에서는 조세 감면 조치를 받을 대상기관의 수와 감면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안 제19조) 현 시점에서는 인정마크 등을 교부할 사회서비스 기관의 수 등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어려움
 - (안 제23조)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e음)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안에 따라 추가로 확대 구축하게 될 시스템의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본 추계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조문을 제외하고, 안 제5조, 제7조, 제8조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주기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가 2021년 수행한 “사회서비스 의제 발굴 및 정책전략의 재구조화 연구” 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보건복지부는 향후 사회서비스 정책의 비전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2021년 “사회서비스 의제 발굴 및 정책전략의 재구조화 연구” 용역(5,980만원 소요)을 실시하였음

- 본 추계에서는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에 “사회서비스 의제 발굴 및 정책전략의 재구조화 연구” 용역 사례와 동일한 약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결과, 5년 주기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6,000만원으로 추계

[표 2]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 분	(단위: 백만원)						연평균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	60	-	-	-	-	60	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 운영(안 제7조)

-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서는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시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회원 구성 및 회의 참석수당 단가, 연간 회의 개최횟수 등을 참고하여 추계
 - 제정안은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 현재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7명의 위촉 민간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대면 회의 시 15만원, 서면 회의 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3년 대면 회의 2회, 서면회의 2회 등 총 4회의 회의를 개최
 - 본 추계에서는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에 7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매년 회의는 대면 회의 2회, 서면회의 2회 등 총 4회 개최하여 대면 회의

시에는 위촉위원 1인당 15만원, 서면 회의 시에는 위촉위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750만원(연평균 350만원)으로 추계

[표 3]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명, 회)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회의수당 단가(A)	0.125	0.125	0.125	0.125	0.125	-	-
인원 수(B)	7	7	7	7	7	-	-
회의개최 횟수(C)	4	4	4	4	4	-	-
추가재정소요(A×B×C)	3.5	3.5	3.5	3.5	3.5	17.5	3.5

주: 대면회의의 2회 개최에 회의 당 15만원 지급, 서면회의의 2회 개최에 회의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회의수당 단가를 12.5만원으로 산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실태조사(안 제8조)

-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사회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의 최근 사회서비스 관련 실태조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를 해당 연도에 실시
 - “2019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에 3억 6천만원,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에 4억원,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에 1억 7,810만원 소요
 - 본 추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수행한 사회서비스 관련 실태조사 사례의 소요재정 평균액을 참고하여 사회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 수행에 매년 3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매년 사회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5억원으로 추계

[표 4]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실시 (안 제8조)	300	300	300	300	300	1,500	3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